

추가약정서(구매기업용)

(B2B 일반자금대출용)

20 년 월 일

본 인 _____ (인)

주 소 _____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본인은 “B2B 일반자금대출”(이하“대출”이라 한다)의 이용과 관련하여“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 및 “기업간 전자상거래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서비스 이용약관”이라 한다)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하나은행과 체결한 ____년 ____월 ____일 여신거래약정서(이하 “원약정서”라 한다)에 추가하여 아래 조항을 약약한다.

제 1 조(대출의 신청 및 실행시기)

본인은 B2B 마켓플레이스(이하 “MP”라 한다)를 통하여 판매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 및 용역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본인이 직접 은행의 인터넷(CBS)에 접속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며, 은행은 본인의 신청 즉시 대출을 실행하여 판매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매대 보호거래 방식인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즉시 대출을 자동으로 실행하여 경과계정에 위탁하고 본인의 권리이전(인수) 의사 표시 후에 판매기업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 2 조(결제계좌로부터의 인출)

- ① 제 1 조에 의하여 대출이 실행되어 본인의 결제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은 본인으로부터 별도의 출금의뢰가 없더라도 은행이 임의 인출하여 판매업체의 계좌(일반거래방식) 또는 은행의 경과계정(매대보호거래방식)에 입금하는 것에 대하여 본인은 동의하고 이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이 약정서의 체결로써 은행에 수여한다.
- ② 전항의 결제계좌는 본인이 은행의 인터넷(CBS)에 접속하여 직접 등록한 계좌로 한다.

제 3 조(대출의 용도 제한)

본인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전자상거래(B2B) 대출보증용 (기술)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MP를 통하여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대금 결제용으로만 대출을 이용하기로 한다.

제 4 조(대출이자율 등)

대출이자율, 이자납부방법, 지연배상금율 등은 "원약정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을 적용하기로 한다.

제 5 조(대출금의 상환)

대출 만기시 본인이 미리 입금한 제 2 조의 결제계좌에서 자동 인출하여 대출금을 상환한다.

제 6 조(정보제공 동의)

본인은 대출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이 다음의 정보를 MP 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이 약정의 체결로써 동의한다.

- ① 본인의 본 대출의 한도 및 잔액
- ② 전국은행연합회가 보유하는 본인의 신용관리대상정보 및 금융결제원의 부도 정보

제 7 조(대출의 제한)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 1.본 대출 한도가 부족한 경우
- 2.본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의 일부라도 지체하는 경우
- 3.본 대출 이외 은행이 본인에게 제공한 타 여신이 연체된 경우
- 4.본인이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 대위변제정보,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때
- 5.본인이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 6.본 대출이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담보대출인 경우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7.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7 조에서 정한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가 발생한 경우
- 8.기타 금융 경제 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대출한도 축소가 불가피한 경우

제 8 조(면책사항)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은행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9 조(효력)

본 추가약정서, 원 약정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서비스이용약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본 추가약정이 가장 우선하고 다음으로 원 약정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서비스 이용약관의 순서로 한다.

제 10 조(기타 특약사항)

--

본인은 기업간 전자상거래서비스 이용약관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 제 6 조의 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본인: (인)
--	---------